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2009년 12월 pp.43~73
한국세무학회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신현걸* · 정재연**

<요 약>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 비상각자산,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 또는 순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매우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유가증권과 같이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퇴직급여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규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세무조정 사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치 평가, 세무조정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shinhg@konkuk.ac.kr, 02-450-3648, 제1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jjjung@kangwon.ac.kr, 033-250-6177, 교신저자

I. 서 론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의하면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선택적인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외)하고, 201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칭함)과 현행 회계기준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

첫째, 재무제표 공시체계에 차이(연결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차이(공정가치 vs. 역사적원가)를 보인다. 현행 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중에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무 상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원가법 평가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될 경우 세무조정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도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특히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평가)는 실무적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데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계와 재계에서는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평가를 세법에서 대폭 수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될 경우 세무조정의 수행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변화 중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

1) 금융감독원. 2008. IFR개요·로드맵·해외도입사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후, 각 규정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무조정 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간 내에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로써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생물자산 등 현행 회계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 세법의 틀 안에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I장의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III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중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제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재무제표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왔다. 이는 유용한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일차적인 질적 속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후자인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재무제표에 기초한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가 주목을 받으면서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 중 어떤 측정기준이 기업가치와 더 관련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공정가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공정가치 회계정보의 우월성을 일관성 있게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정가치 추정에 상당한 측정오류가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

Barth(1991)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측정하는데 있어 어떤 측정치가 기업 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기업가치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연금자산 및 연금부채의 금액보다 주식으로 공시되는 정보가 기업의 시장가치 평가금액을 더 적절하게 보여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공시되는 회계정보도 기업가치 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Barth(1994)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 공시하는 공정가치 정보가 역사적 원가에 비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분석대상을 은행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의 측정오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경우와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액과 주식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금액에 비해 공정시가 정보가 가치 관련성이 더 높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투자유가증권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주식수익률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정보의 가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공정가치 정보가 역사적 원가 정보에 비해 가치 관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다.

Barth와 Clinch(1998)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들은 호주의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하여 보유자산을 금융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공정가치 정보가 주가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주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주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Aboody et al.(1999)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고정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재평가가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측정한 기업의 미래성과와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고정자산의 재평가가 기업 가치를 변동시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정자산 재평가와 주가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다만, 재평가와 기업의 미래성과 및 주가 간의 상관관계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회계기준(APB Opinion NO.18)에서는 투자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때 당해 피투자회사 주식이 상장주식이라면 시가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Graham et al.(2003)은 이러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주식의 시가와 주식수익률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피투자회사 주식의 시가정보가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Barth(1991)의 연구에서는 주식공시 정보도 기업가치 평가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Ahmed et al.(2006)은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경우와 주식으로 공시되는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은 주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주식으로 공시한 금액은 주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들은 재무제표 인식과 주식공시가 대체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Barth(1991)의 연구결과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EU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되 기업이 선택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이용자는 기업의 보고이익 변동성(volatility)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rmakowicz 2004, Schipper 2005). Bartov et al.(2005)은 독일기

업을 대상으로 미국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독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이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익을 보고한 기업에 국한되었으며, 손실을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정가치 정보가 역사적 원가 정보에 비해 가치 관련성이 더 높은지 또는 국제회계기준이 다른 회계기준에 비해 가치 관련성이 더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Jermakowicz (2004)는 벨기에의 현행 회계기준이 세법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세법과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공정가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권수영 등(1998)은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상품주식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상품주식의 운용이 왜곡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이익이 발생한 종목은 매각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왜곡된 상품주식 운용행태가 발견되었으며, 상품주식의 미실현 평가손실이 큰 기업일수록 상품유가증권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송인만 등(2000)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의 시가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유가증권평가차액이 취득원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이 추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유가증권의 평가차액 및 평가손익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수준 및 추가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서 취득원가 및 취득원가에 기초한 이익에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시가정보 및 평가손익 정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김권중과 김문철(2000)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된 공정가치 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김상철 등(2002)은 비금융제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된 유가증권 시장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는데, 모두 주가에 대해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윤승준 외(2007)는 Graham et al.(2003)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공정가치 정보가 지분법 정보에 추가적인 가치 관련성 및 정보유용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기업가치 및 기업가치 변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투자회사 지분율의 상대적 차이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의 가치 관련성 또는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공정가치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정국 외(2004)는 한국의 회계기준을 보다 국제화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IASB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준환 외(2006)는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정도에 대한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의 완전수용은 회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의 관점에서 효율성 및 국제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신뢰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국가별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문철 외(2006)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할 경우 한국의 고유한 특성이 국제회계기준에 반영되지 못하여 회계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실증논문으로 한봉희(2006)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1999년에 개정된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기준이 가치 관련성을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는데, 1999년 이후로 자본화된 연구개발비의 가치 관련성이 비용처리된 연구개발비에 비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개정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최근의 실증연구로 신현걸(2008a)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재무비율과 가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그는 개별재무제표의 주가관련성보다 연결재무제표의 주가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발견하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격이 주로 개별재무제표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현걸(2008b)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할 경우 가치관련성에 추가적인 설명력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토지의 공시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주가 또는 주식수익률 변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는데,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가 추가적인 가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유를 이미 주식으로 공시된 공시지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문철과 이준규(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문철과 이준규(2008)의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 규정

자산의 측정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은 광범위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각 기준서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은 공정가치 평가로 보기 곤란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1.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최초로 원가로 인식한 이후에 기업은 원가모형만 적용할 수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²⁾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³⁾이란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고 시장에 근거한 증거로 결정하며, 설비장치와 기계장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문단 32). 그러나 해당 유형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가치에 대해 시장에 근거한 증거가 없고, 해당 자산이 계속 사업의 일부로서 거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이익접근법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언급하고 있다(문단 34).⁵⁾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따라서 기업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한 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할 수 없으며, 보유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재평가한다.

유형자산의 최초 재평가시 평가증을 할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며, 이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감을 할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이를 재평가손실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최초 재평가시 평가감을 할 경우에는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이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증을 할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손실만큼 재평가이익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초과액이 있으면 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한편 재평가잉여금은 향후 당해 유형자산의 폐기나 처분시점에서 이익잉여금

2)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문단 37에서는 유형자산을 토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비품의 분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문단 37의 분류는 예시에 해당되므로 기업은 유형자산을 다른 분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재평가모형도 공정가치모형(fair value model)의 한 종류이다. 다만, 재평가모형에서는 장부금액의 증액부분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반면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재평가법(2000년 12월 31일에 폐지)을 적용한 바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생산자 물가가 25%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재평가를 허용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에 해당하는 재평가모형과는 상이한 제도이다.

5) 이익접근법과 상각후대체원가법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두 방법의 개념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접근법은 당해 자산으로부터 미래 창출될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상각후대체원가법은 별도로 분리하여 매각하기 어렵거나 당해 자산의 규모나 위치의 특별한 성격상 거래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 현재 상태(경과연수, 상태, 진부화 정도 등)를 고려한 자산의 대체원가 즉, 재취득원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원가로 인식한다(문단 15). 이 때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문단 6). 따라서 유형자산 취득시 지급하거나 제공한 현금 등의 대가가 없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없다.

2.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만 적용하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최초 원가로 인식한 이후에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⁶⁾이 존재하여야 한다(문단 7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무형자산의 재평가시 공정가치를 결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가치 결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한 최초 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이나, 취득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3.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데,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 회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문단 9). 따라서 기업마다 회계정책을 상이하게 수립함으로써 특정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가 다소 다를 수 있다. 단,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를 적용한다.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예 : 차량운반구, 시추장비 등)이나 무형자산(예 : 시추권)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발생한 지출은 당해 광물자원의 취득원가(또는 생산원

6) 활성거래시장이란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을 말한다.

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평가자산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최초에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문단 12).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술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적용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한다.

4.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각 부분별로 매각이 가능하다면 임대목적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가사용 목적부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업에서만 임대목적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업종에서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fair value model)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여야 한다(문단 3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비전형적 자금조달, 판매후 리스계약, 매각과 관련된 자가 특별한 대가나 이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락된 예상가격은 공정가치가 아니다(문단 36). 또한 공정가치는 매각이나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문단 37).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였다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반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공정가치 평가손익만 인식한다.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변동을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이 보유하는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포함)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때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국제회계기

준에서는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공정가치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최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후 당해 자산의 순공정가치 증감을 측정하여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측정하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각예정분류시점에 손실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6.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결정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의 대체적인 추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한편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수확시점의 수확물의 순공정가치는 재고자산이나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문단 17). 만일 생물자산에 대한 시장결정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 순현금흐름을 세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구한다(문단 20).

7.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⁷⁾ 따라서 기업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7)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은 그러한 지정으로 인하여 인식이나 측정상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당해 항목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문단 9).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는 금액)로 측정한다. 그러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따라서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하므로 세법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한다(문단 48A).

8. 확정급여제도 하에서의 사외적립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하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확정급여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에 소요될 재원을 사외기금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한다(문단 54). 따라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얼마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될 부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공정가치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한다(문단 102).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만기나 예상치 분일과 사외적립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에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규정만 있을 뿐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9. 정부보조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관련 자산에서 차감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된다. 반면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후자의 방법만 허용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정부보조금을 비화폐성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이다. 정부보조금이 현금 등 화폐성자산이 아니라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최초로 비화폐성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 정부보조로 이전받는 비화폐성자산은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목상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자산·부채 측정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정가치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제1016호)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	원가모형만 인정
무형자산(제1038호)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	원가모형만 인정
탐사평가자산(제1106호)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	관련 규정 없음
투자부동산(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 가능	원가모형만 인정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금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생물자산(제1041호)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	관련 규정 없음
금융자산(제1039호)	대여금,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및 동 지분상품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공정가치 측정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
종업원급여(제1019호)	확정급여부채 측정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계산한 기대수익 반영	관련 규정 없음
정부보조금(제1020호)	비화폐성 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령한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리	관련 규정 없음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관련 자산에서 차감표시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	자산에서 차감표시 하는 방법만 허용

IV.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미실현 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원가법 평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함)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는 예외적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2조).

- 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 ② 채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③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 ④ 대통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⑥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 ⑦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본 연구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가법 평가원칙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및 세무조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경우 세무상 원가법 평가원칙 하에서는 평가증 및 평가감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⁸⁾

다음은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재평가모형 적용시 각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최초 재평가시(평가증)>

회계처리 : (차) 토 지 × × × (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 ×

세무조정 : <익 금 산 입> 재평가잉여금 × × × (기타)

<익금불산입> 토지 재평가이익 × × × (△유보)

8)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아래 제시한 사례와 동일한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최초 재평가시(평가감)>

회계처리 : (차) 재평가손실 ××× (대) 토 지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토지 재평가손실 ××× (유보)

● 세무조정 사례 :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 적용

(주)국제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제10기(2009.1.1~12.31) 중 토지를 취득하고 원가(100백만원)로 인식하였다. 제10기말 재평가결과 공정가치가 120백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변동되어 제11기말에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가 90백만원으로 하락하였다.

평가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토 지	20	(대) 재평가잉여금	20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기타) <익금불산입> 토지 재평가이익 20(△유보)			
제11기말	회계처리	(차) 재평가잉여금	20	(대) 토 지	30
	세무조정	재평가손실 10 <손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기타) <익금산입> 토지 재평가이익 20(유보) <손금불산입> 토지 재평가손실 10(유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많지 않고 사후관리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세무조정 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사후관리와 관련된 세무조정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최초 재평가시(평가증)>

회계처리 : (차) 기 계 장 치 ××× (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 (기타)

<익금불산입> 기계장치 재평가이익 ××× (△유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회계처리 : (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대)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기계장치 자산감액분(△유보분) 상각비 ×××* (유보)

$$* \text{기계장치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기계장치 } \Delta \text{유보잔액}}{\text{기계장치 상각전 B/S 상 자산가액}}$$

● **세무조정 사례 : 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 적용—재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백만원, 잔존가치 없음, 내용연수 5년)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주)국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세무상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한편 제10기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120백만원이다.

평가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차) 감가상각누계액	20	(대) 재평가잉여금	40
		기 계 장 치	20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40(기타)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40(△유보)			
제11기말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3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계장치 자산감액분 상각비 10*(유보)			

* 자산감액분 상각비 : 30백만원×40백만원/120백만원=10백만원

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이익을 계상하고 이를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할 때마다 △유보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 재평가시(평가감)>

회계처리 : (차) 재평가손실 ××× (대) 기 계 장 치 ×××

세무조정 : 재평가손실 계상액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 시부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무조정 사례 : 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 적용—재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백만원, 잔존가치 없음, 내용연수 5년)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주)국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세무상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한편 제10기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50백만원, 제11기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80백만원이다.

평가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차) 재평가손실	30	(대) 기계장치	50
		감가상각누계액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30(유보)	
제11기말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2.5	(대) 감가상각누계액	12.5
		(차) 감가상각누계액	12.5	(대) 재평가이익	22.5
		기 계 장 치	30	재평가잉여금	20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기타)	
		<손금산입>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30*(△유보)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12.5(△유보)	

* [20백만원(감가상각비)+30백만원(즉시상각의제액)] - 20백만원(세무상 상각범위액) = 30백만원

● **세무조정 사례** : 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 최초적용-재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모형(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취득원가 100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50백만원, 상각부인누계액 10백만원, 잔존가치 없음,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상각)의 제10기말 공정가치는 35백만원이다. 세무상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평가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
		(차) 감가상각누계액	60	(대) 기 계 장 치	65
		재평가손실	5		
	세무조정	<손금산입>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5*(△유보)	

* 시인부족액 = [10백만원(감가상각비)+5백만원(즉시상각의제액)] - 20백만원(세무상 상각범위액)
= △5백만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증한 경우에는 각 기계장치별로 △유보분 상각비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평가감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의제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정 및 그 사후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유보잔액이 남아 있는 기계장치를 중도에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장치의 △유보잔액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또한 관리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상각자산은 비상각자산에 비하여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며, 해당자산 분류에 속하는 자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과 같이 자산분류에 속하는 자산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또는 비품과 같이 자산의 개수가 많은 자산분류보다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세무조정의 부담이 작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세무상 원가법 평가원칙이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증이 가능한 자산분류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유형자산 취득 시 지급한 대가가 없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0'이 되며,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취득당시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형자산의 무상수증시>

회계처리 : 없음

세무조정 : <익금산입> 무상취득 유형자산 ××× (유보)

● 세무조정 사례 : 유형자산 무상취득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1월 1일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취득당시의 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주)국제는 토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한편 제10기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백만원이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취득시점	회계처리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산수증이익		100(유보)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토지	120	(대) 재평가잉여금	120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120(기타)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120(△유보)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최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후 당해 자산의 순공정가치 증감을 측정하여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음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각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최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회계처리 :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대) 비유동자산	×××
손 상 차 손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손상차손 ××× (유보)

<이후 순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회계처리 : (차) 손 상 차 손 ××× (대)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손상차손 ××× (유보)

<이후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회계처리 :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대) 손상차손환입 ×××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손상차손환입 ××× (△유보)

● 세무조정 사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순공정가치 평가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7월 1일에 공장건물(장부금액 100백만원)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일 현재 공장건물의 순공정가치는 80백만원이며, 제10기 말 현재 공정가치는 110백만원이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7월 1일	회계처리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 상 차 손	80 20	(대) 건 물	1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손상차손 20(유보)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0	(대) 손상차손환입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손상차손환입 20(△유보)			

* 손상차손화입액은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누계액(20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거래빈도가 높지 않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순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농림어업과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물자산을 매입하는 경우⁹⁾(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 (차) 생 물 자 산 × × × (대) 현 금 × × ×
 생물자산평가이익 × × ×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생물자산평가이익 × × × (△유보)

<사업연도 말에 생물자산을 평가하는 경우(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 (차) 생물자산평가손실 × × × (대) 생 물 자 산 × ×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생물자산평가손실 × × × (유보)

● 세무조정 사례 : 생물자산의 취득 및 평가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1월 1일에 한우 1마리를 1,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한우는 7월 1일에 송아지 1마리를 낳았으며, 동일자의 송아지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200,000원이다. 제10기말 현재 한우 1마리의 순공정가치는 900,000원이며, 송아지 1마리의 순공정가치는 300,000원이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천원)			
1월 1일	회계처리	(차) 생물자산(한우)	1,000	(대) 현 금	1,000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7월 1일	회계처리	(차) 생물자산(송아지)	200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200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9) 생물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 등)에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도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와 세무상의 시가개념이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천원)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생물자산평가손실	200	(대) 생물자산(한우)	200
		(차) 생물자산(송아지)	100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1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생물자산평가손실 200(유보) <익금불산입> 생물자산평가이익 100(△유보)			

* 세무상 취득당시 시가와 순공정가치가 일치한다는 가정에 의함.

한편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수확시점의 수확물의 순공정가치는 재고자산이나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수확물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재고자산의 경우)>

회계처리 : (차) 수 확 물 × × × (대) 수확물평가이익 × × ×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확물평가이익 × × ×*(△유보) 또는

<손금불산입> 수확물평가손실 × × ×*(유보)

*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생산원가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순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말에 수확물을 평가하는 경우(재고자산으로서 순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회계처리 : (차) 수확물평가손실 × × × (대) 수 확 물 × ×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수확물평가손실 × × × (유보)¹⁰⁾

● 세무조정 사례 : 수확물의 취득 및 평가

(주)국제는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된 감귤을 음료생산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12월 1일에 100톤의 감귤을 수확하였으며, 생산된 감귤의 순공정가치는 100백만원이다. 회사는 제10기(2009.1.1~12.31)말 현재 생산된 감귤을 전량 보관하고 있으며, 제10기말 현재 감귤의 순공정가치는 90백만원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감귤재배를 위한 생산원가 및 부대비용은 80백만원(세무상 취득원가)이다.

10)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7월 1일	회계처리	(차) 단기매매증권 지급수수료(거래비용)	100 5*	(대) 현 금	105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지급수수료 5(유보)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	(대) 단기매매증권	1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유보)			

*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100백만원)에 기타부대비용(5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므로 지급수수료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평가증)>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 기타포괄손익 ×××

세무조정 : <익 금 산 입> 기타포괄손익 ××× (기타)

<익금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 (△유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재분류조정)>

회계처리 : (차) 현 금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세무조정 : <손 금 산 입> 기타포괄손익 ××× (기타)

<익 금 산 입> 매도가능금융자산 ××× (유보)

● 세무조정 사례 :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주)국제는 제10기(2009.1.1~12.31) 7월 1일에 A사 주식 10,000주를 100백만원(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일치함)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제10기말 현재 A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110백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회사는 제11기 4월 1일에 동 주식 전부를 115백만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시점	구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제10기 7월 1일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100	(대) 현 금	100
	세무조정	없음			
제10기말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10	(대) 기타포괄손익	10
	세무조정	<익 금 산 입> 기타포괄손익 10(기타)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유보)			
제11기 4월 1일	회계처리	(차) 현 기타포괄손익	115 10	(대)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10 15
	세무조정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 10(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유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은 지급한 대가와 금융자산의 취득원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이러한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일일이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가증권(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유가증권과 같이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확정급여제도 하에서의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사외적립자산(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매 보고기간 마다 비용으로 인식할 퇴직급여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당기 근무원가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 보험수리적손실	×××
- 보험수리적이익	(×××)
+ 과거 근무원가	×××
퇴직급여 인식액	<u>×××</u>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첫째, 당기 근무원가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문적인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한 미래의 퇴직급여 중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이것은 공정가치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이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칭함)를 현재가치로 인식할 경우 현행 세법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액을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하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 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급여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초로 손금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세무목적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개념도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전반적인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문제이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사외적립자산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며, 공정가치로 측정된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기대수익만 퇴직급여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수익 중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항목(예를 들면,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급여에는 보험수리적손익이 포함된다. 보험수리적손익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종업원의 이직률이나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변동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보험수리적손익도 현행 세법상 손금이나 익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과거근무원가는 당기에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수리적가정을 고려한 현재가치 측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법에서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복잡한 세무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액과도 연결되어 있다. 만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규정을 법인세법이 수용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정부보조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관련 자산에서 차감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된다. 후자의 방법은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다.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익금에 산입하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간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이 상각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수취하는 사업연도에는 정부보조금 총액과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익금산입(유보)하고, 향후 이연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Δ 유보)함으로써 사후관리 해 나가야 한다.

한편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세무상으로 사후관리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정부보조금 총액과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고,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수령하는 정부보조금은 그 빈도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변화 중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정 상의 복잡함 또는 Δ 유보잔액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거래빈도가 높지 않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순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조정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보유하는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유보(또는 Δ 유보)잔액을 사후관리하는데 매우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은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일일이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기존의 유가증권과 같이 금융상품의 개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많고 경우에는 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

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퇴직급여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수리적가정을 고려한 현재가치 측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법에서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복잡한 세무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정부보조금 총액과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고,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수령하는 정부보조금은 그 빈도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규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세무조정 사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기준서 제1019호)과 금융자산(제1039호)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개정 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 김문철 · 김종국. 1998. “증권회사의 상품평가손의 회계처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1호 : 25 - 50.
- 금융감독원. 2008. 「IFR개요 · 로드맵 · 해외도입사례」. 설명자료
- 김권중 · 김문철. 2000. “금융업을 이용한 공정가치 회계정보의 유용성 분석”. 회계학연구 제25권 제3호 : 133 - 154.
- 김문철 · 안영균 · 정혜영. 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 15권 제3호 : 165 - 194.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155 - 185.
- 김상철 · 백원선 · 이효익. 2002.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주가관련성”.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 117 - 138.
- 김정국 · 문점식 · 서정우. 2004. “회계기준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87 - 118.
- 송인만 · 박철우 · 양동훈. 2000. “유가증권 시가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25권 제3호 : 1 - 27.
- 신현걸. 2008a.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3호 : 1109 - 1136.
- . 2008b.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토지의 공정가치 모형의 가치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 285 - 311
- 오준환 · 김호중 · 김성남. 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용 수준, 대상 및 시가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 31 - 58.
- 윤승준 · 박연희 · 조현우. 2007.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1 - 28.
- 한봉희. 2006.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한 시장 반응”.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97 - 126.
- Aboody, D., M. E. Barth, and R. Kasznik. 1999. Revaluation of fixed assets and future firm performance :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6 : 149 - 178.
- Ahmed, A. S., E. Kilic, and G. J. Lobo. 2006. Does recognition versus disclosure matter? Evidence from value - relevance of banks' recognized and disclosed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The Accounting Review* 81 : 567 - 588.
- Barth. 1991. Relative measurement errors among alternative pension assets and liability measures. *The Accounting Review* 66 : 433 - 463.
- Barth. 1994. Fair value accounting : Evidence fro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banks. *The Accounting Review* 69 : 1 - 25.

- Barth, M., and G. Clinch. 1998. Revalued financia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 Associations with share prices and non - market - based value estimat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Supplement : 199 - 233.
- Bartov, E., S. R. Goldberg, and M. Kim. 2005. Comparative value relevance among German,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A German stock market perspective.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0. 95 - 119.
- Graham, R. C., C. E. Lefanowicz, and K. R. Petroni. 2003. The value relevance of equity method fair value disclosur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0(7) : 1065 - 1088.
- Jermakowicz, E. K. 2004. Effects of adoption of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in Belgium : The evidence from BEL - 20 companies. *Accounting in Europe* 1. 51 - 70.
- Schipper, K. 2005.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Europe :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nvergence.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 101 - 126.

The Effect of the Fair Value Model under IFRS on Tax Reconciliation

Hyun Geol Shin* · Jae Yeon Jeong**

—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an effect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the reconciliation of corporate tax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IFRS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ax reconciliation since the assets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can be measured at fair value under IFRS, however the corporate tax law does not basically admit the measurement of fair value.

We provide the expected effect of IFRS on the reconciliation of corporate tax as follows. The reconciliation proces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when the companies adopt the revaluation model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property and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new tax regulation is needed for the treatment of agricultural produce and a biological assets since Korean tax law does not have any related rules. It is desirable for the tax law to admit the IFRS's fair value model especially for the financial instruments to reduce the practical burden for reconciliation. And it is inevitable to reform the tax law to deal with the employee pension plan because the basic concept and approach of IFRS and those of tax law are bas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area of fair value measurement under IFRS is so enormous that we cannot include all of the reconciliation and review the specific cases in detail. However,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 in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the tax authority to reform the corporate tax law in the future.

<Key words> IFRS, fair value model, tax reconciliation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